

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4.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과장 김봉조)

□ 제안이유

강서구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나.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내용 (안 제3조)
- 다. 관광진흥사업 지원, 업무 위탁 (안 제4조 및 제6조)
- 라. 관광안내소의 설치, 운영, 위탁 및 사전 승인 (안 제7조 및 제9조)
- 마. 포상 등 (안 제10조)
- 바.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11조)
- 사.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아. 위원회 운영 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 및 제76조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

나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2. 20. ~ 3. 10.) 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기획예산과
- 3) 부패영향평가 : 감사담당관
- 4) 성별영향평가 : 가족정책과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배금택)

가. 제정 취지

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관광진흥계획의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 규정(안 제3조)
- 관광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규정(안 제4조)
- 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,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(안 제5조 및 제6조)
- 관광객 안내,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이나 타인 사용허가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(안 제7조~제9조)
- 관광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실시하는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1만원 이내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(안 제10조)
 - ※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 사업
 - 우리구 숨어있는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 허준박물관, 양천향교, 소악루, 궁산땅굴, 겸재정선미술관, 서울식물원, 개화산둘레길(호국충혼비, 개화산 봉수대) 관광명소 8개소 스탬프 투어 인증 후 1만원 이내 기념품 증정
-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~제14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강서구 관광진흥을 위해 진흥계획의 수립,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,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문제점은 없으나
-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인프라를 확대함은 물론 현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 및 허준박물관, 겸재정선미술관 등 관내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강서구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

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제76조(재정지원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□ 공직선거법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이 법에서 "기부행위"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4. 직무상의 행위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